

公法人 農協도 固有業種 調整對象

瓦板紙包裝 農協直營工場 中止措置告白

中止措置由農協提出建議「農博」瓦板紙包裝工場停止營業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의 모범 개정전의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서는 「고유업종 조정 대상은 회사 및 개인인 대기업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농협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사 및 개인기업 이외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조정 정책 목적상 정부나 공법인, 공공기관은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 오던 중,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98호로 동법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편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인 「회사 및 개인에 한한다」가 삭제되고, 재경 취지에서 정부 또는 공공법인도 고유업종 영위시 조정대상이 된다고 각 부처간에 조회하여 동 법률 제2조에서 「대기업자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자」의 규정에 따라 공법인도 대기업자 등에 해당 되도록 개정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강원도 우천농협 골판지포장 생산 직영공장을 비롯하여 전남 나주 중부 농협 골판지포장 공장, 경북 능금농협 골판지포장공장, 경남 남지 농협 골판지포장 공장, 제주감귤농협 골판지포장공장 등 5개 농협 직영 골판지포장 공장에 대하여 작년 97년 11월 26일 부로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 비서관), 통상산업부장관(화학공업과장), 중소기업청장(화학공업과장), 농림부부장관(농업금융과장), 행정체신위원장(총무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조합지원부장), 농협중앙회장(자재부장) 등에게 「固有業種인 農業

協同組合의 中小企業, 固有業種 瓦板紙 및 瓦板紙箱子 製造工場 直營事業 中止措置」를 建議하여, 지난 97년 12월 29일에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지원 총괄국장 주재아래, 농림부 농업금융과장,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 중소기업청 화학공업과장,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 농협 중앙회 이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및 우천농협, 나주 중부 농협, 경북 능금 농협, 경남 남지 농협, 제주감귤 농협 조합장 및 골판지포장 공장 책임자 참석리에 「농협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에 따른 처리 대책 회의」를 갖고 농협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포장 직영 공장 사업 무단 참여는 현행 실정법(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위반(확장 미신고) 및 동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위반(영위 미신고)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대한 제재 조치는 동 법률 제4조 제2항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법률 부칙 제4조 2항 위반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검토하고, 일단 관제기관(통산부 중소기업청, 기협중앙회 및 한국골판지포장조합) 합동으로 5개 농협 골판지포장 직영 공장의 시설 실태조사를 지난 98년 2월 1일부터 5일간 실시하여 동 5개 농협으로 하여금 중기청장에게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동 농협 골판지포장 직영 공장은 증설이나 기존 시설개체시 2개월전에 중기청장에게 신고하여 사전 심사조정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의 동 건의서 전문과 해당 법률을 조문을 게재한다.

I. 農協直營 골판지包裝工場 中止措置建議 全文

韓國 골판지包裝工業協同組合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N.

文書番號 골包協(政策12)441號

施行日字 1997. 11. 26

受 信 大統領秘書室長, 通商產業部長官, 農林部長官, 中小企業廳長, 經濟規制改革委員會, 農業協同組合
中央會長,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長

參 照 經濟首席秘書官, 化學工業課長, 農業金融課長, 化學工業課長, 總務課長,
資材部長, 組合支援部長,

題 目 公共機關인 農業協同組合의 中小企業 固有業種 골판지 및 골판지箱子 製造工場
直營事業 中止措置 建議

1. 新農政 推進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2. 弊 韓國 골판지包裝工業協同組合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依據, 通商產業部長官 認可 第 127號
(1984. 11. 17) 由 設立된 골판지 및 골판지箱子 製造業을 管掌하고 있는 工業協同組合이며

3. 同 골판지包裝製造業은 多種少量生產 低附加價值 加工의 典型的인 中小企業임으로, 政府는 中小企業
의 事業領域保護 및 企業間 協力 增進에 關한 法律에 따라, 同 골판지 및 골판지箱子 製造業을 中小企業 固有業
種으로 指定하여, 이 中小企業 固有業種 分野에 對한 大企業者 等의 參與를 制限 規制하고 있습니다.

4. 같은 脈絡의 政府 中小企業 支援政策의 하나인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9條에
依하면, 公共機關이 物品을 購買할 때에는 該當 物品을 管掌하는 中小企業協同組合과 優先的으로 團體隨意契約
을 締結하여, 中小企業의 販路 擴大를 支援하도록 하는 制度가 確立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公共機關에는
同法 施行令 第2條 第4項 3號에 農業協同組合이 그 對象으로 規定되고 있습니다.

5. 이와같이 法律이 規定하고 있는 中小企業政策에서 볼 때, 農業協同組合은 中小企業 固有業種 營爲 골
판지包裝業者로 부터 團體隨意契約으로 골판지箱子를 購買해 주어야 할 位置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全國에서 무
려 5個 農業協同組合이 莫強한 組織力과 資金力を 動員, 위 中小企業育成 法律 制度政策에 反하여, 中小企業 固
有業種인 골판지 및 골판지箱子 製造 農協直營 工場을 繼續 營爲함으로서, 獨占供給으로 公正去來法까지 違反하
고 있음은勿論,

6. 農林部 金融 27117-1314(1987. 7. 16) 및 同部 金融 51184-347(1993. 9. 20) 公文의『이미 設立된 農
協直營 골판지包裝工場은 耘板紙箱子를 管內 農民에게만 限定 供給하고, 앞으로 農協은 農產物 加工業에 注力하
되, 工產品加工業은 止揚할 것』이라는 農林部長官의 指示도 어기고 있을 뿐만아니라, 近者에 農協 골판지包裝

直營 工場들은 他 地域은 勿論, 農產物 水產物 工產品에 까지도 受注 販賣하는 現狀입니다.

7. 이와같이 農業經營業 團體인 農協이 營農資金 및 營農資材 調整權과 關聯하여, 골판紙箱子 需要市場 農民이 農協所屬下에 있다해서, 工產品인 골판紙箱子業까지를 營爲함은, 分明 中小企業固有業種 政策에 反하는 不要浪費 投資이며, 結果 專門 골판紙包裝業者까지 倒產의 破局으로 몰아, 今 97年만해도 골판紙包裝 專門業者 15個社가 不渡休廢되고 있는 實情임으로

8. 同 農業協同組合의 골판紙包裝 直營工場事業의 中止와 農產物 加工 工場으로의 轉換을 措置하여 주실것을 다음 事由를 摘示하여 建議하오니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建議事項]

農業協同組合法에 依據 設立된 農業經營團體인 다음 農業協同組合(特殊 農業協同組合 包含)의 中小企業固有業種 골판紙包裝 製造 直營工場事業을 中止케하고, 農產物 加工事業으로 轉換 注力케 하여, 農業과 工業이 共同發展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協直營 골판紙包裝工場 List

工 場 名	所 在 地	出資 形態
慶北 능금 農業協同組合	大邱 東區 新川洞 329-7	組合 自體
昌寧 南旨 農業協同組合	慶南 昌寧郡 南旨里 6629	組合 自體
濟州 柑橘 農業協同組合	濟州 西歸浦市 西歸洞 586-10	組合 自體
全南 農協包裝材加工事業所	光州 光山區 三巨洞 537-1	道內 農協
江原 農協聯合包裝材事業所	江原 橫城郡 隅川面 陽赤里	道內 農協

2. [農協의] 中小企業固有業種 골판紙包裝製造業을 直營해서는 않되는 理由)

첫 째, 골판紙包裝製造業은 典型的인 中小企業型이기 때문에, 政府는 法律에 따라 中小企業育成政策上 中小企業領域을 保護하는 中小企業固有業種으로 指定한 業種이며, 한便 政府는 法律에 依據, 中小企業의 販路擴大로 經營安定을 圖謀하기 為하여 公共機關과의 團體隨意契約物品으로 指定된 同 골판紙箱子에 對하여, 同法으로 優先 購買해야 할 公共機關으로 法定된 農業協同組合이 中小企業 固有業種 골판紙箱子製造業을 直營하는 것은 中小企業의 事業領域 保護 및 企業間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과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이 定한 政府의 中小企業政策에 反하기 때문입니다.

둘 째, 農業協同組合이라는 公共機關이 莫強한 組織力과 資金力を 利用하여 農產物 加工事業이 아닌 工產品加工 골판紙包裝工場을 建設하여 골판紙箱子가 必要한 傘下 農民 組合員에 對하여 優越的 地位를 濫用하여 排他的 獨占供給을 하는 内部者 去來 行爲는 獨占 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 違反되기 때문

입니다.

셋 째, 附加價值稅法 第12條 第1項 12號 및 同法 施行令 第38條에 依據, 農協 運營工場 生產 골판지箱子에 對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하고, 一般 골판지箱子 製造業者에게는 附加價值稅를 賦課하는 現行制度는 租稅 衡平原則에 反하며, 이로 因한 不公正 價格競爭이 되고 있음은 公正去來原則에 反합니다.

넷 째, 앞의 5個 中小企業 固有業種 골판지包裝 直營工場 農業協同組合들은 農林部 長官의『農協直營 生產 골판지箱子는 管內 組合員에만 供給』, 또는『施設擴大止揚』指示 (農林部 金融27117-1314 <1987. 7. 6>) 와『營農資材인 골판지箱子의 直接生產 參與는 制限하며』,『農協이 中小企業固有業種인 골판지箱子 製造事業을 不得已 推進할 境遇는 關聯團體와 充分히 協議處理할 것』等의 指示를 違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農協 直營工場의 設立 目的은 包裝材의 廉價 適期供給에 있다고 하나, 實際 對農民 農協 供給價格은 一般 골판지包裝業者 供給價格보다 높은 境遇가 많으며, 收支打算을 為하여 全國農協, 農民을 찾아 다니며 去來함으로 物流費가 더 들고, 適期 供給에도 跌跌이 있으며, 農協 直營工場 管理責任 農協은 道內農協이 一般 골판지包裝業者로 부터 골판지箱子를 購入할 境遇, 道 地域本部의 監查壓力等으로 強制營業行爲를 하는 事例와 農協工場이 生產能力不足으로 處理못하는 需要 箱子를 一般골판지箱子 加工業者에게 外注下請하고 있어, 農協 內의 不條理 不合理가 發生하고 있다는 輿論입니다.

여섯째, 全國에 160個의 골판지 및 골판지箱子 一貫生產業體와 800餘個의 골판지箱子 加工業體가 있으며, 稼動率은 68%에 不過하여, 1997年間 골판지包裝業者 15個社가 不渡 倒産되어, 莫大한 골판지包裝製造 施設의 餘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農協直營 골판지包裝工場의 繼續 投資는 浪費投資가 되는 것이오니, 農協 直營 골판지包裝工場 事業은 中止케하고, 이를 農產物 加工工場으로 轉換시킴이 效率的입니다.

有添 1. 農林部 金融 27117-1314(1987. 7. 16) 農協의 골판지箱子 生產 管內 供給措置 公文 寫本 1部

2. 農林部 金融 51184- 347(1993. 9. 20) 農協은 中小企業固有業種 事業 止揚公文寫本 1部

3. 1997年 10月 現在 골판지包裝業界 不渡 休廢業 現況表 1부

을.

韓國 골판지包裝 工業 協同組合
理事長 柳鍾宇

Ⅱ. 農協의 固有業種 골판지製造業 參與 法令 違反根據

1. 농협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무단 참여는 현행 실정법 위반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위반(확장미신고) 및 동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위반(영위 미신고)

① 동 법률 제4조 제2항 「대기업자 등은 고유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개월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동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동 법 시행규칙 시행일

('95. 8. 3)로 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시 제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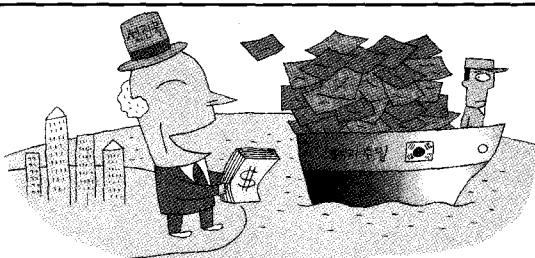
- 동 법률 제4조 제2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농협의 대기업자 등에 해당 여부

동 법률('95. 1. 1 제정) 제2조 「"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공법인도 대기업자 등에 해당

4. 구 중소기업사업조정법('86. 5. 12 개정) 제 2조

대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항의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
(會社 및 個人에 限한다)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

경제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나라경제도, 가정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고 되살려 쓰는 마음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부자 나라일수록 재활용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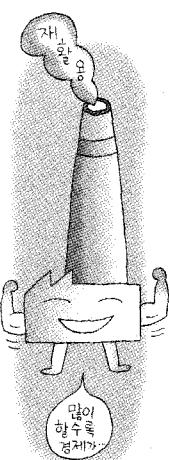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제가 튼튼한 선진국일수록 폐기물 재활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도 해마다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종류의 폐기물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7% 더 늘리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정부는 2000년까지 현재의 재활용률 28%를 35%까지 높이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오늘부터 재활용률 7%늘리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절약효과를 가져옵니다.

■ 폐기물 처리에 5조4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폐기물 대책을 위해 2001년 까지 5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96년 국가예산의 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온 국민이 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면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